

[사건명] 행심 2017 - 5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0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친한 친구사이로 청구인은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며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보라 제안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피해학생은 자신의 집에서 청구인의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으며, 이 사실을 숨기고 청구인과 친하게 지냈다.
- 나. 청구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일을 고민하자 피해학생은 관계를 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렸고, 이에 청구인은 배신을 당했다 화가나 2016. 7. 16. “엿 같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해”라고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고 이에 피해학생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친구들이 쓰게 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실명 및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다. 2016. 07. 18. 청구인은 사과요구 및 오해를 풀고자 피해학생의 교실에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반 아이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이하에서 위 나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조치원인’이라고 함) 피해학생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를 등교하지 않게 되었고, 2016. 07. 19. 피해학생 父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2016. 07. 29.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한다.

가. 2016. 07. 16. 18시경 청구인의 페이스 북 피드에 평소에 낙서하듯 “엿 같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해”라는 글을 올렸지만 피해자 이름이나 성관계 행위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었고, 다만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의 친구가 실명과 행위에 대해 댓글

을 달면서 여러 학생이 알게 된 것 뿐이며, 2016. 07. 18. 새벽1시 경에 페이스 북에서 해당 글을 삭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친구로서 믿음을 쳐버린 것에 대한 사과 요구와 페이스 북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학생 반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오히려 큰소리로 사실을 말해 주변 학생들로부터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을 유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 다. 피해학생은 평소 이성과의 불건전한 조건만남, 랜덤채팅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수십 명이 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고등학교 선도규정 징계기준을 보면 학생이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에는 징계조치하여야 함에도, 학교 측에서는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 및 그 아버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만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조치하였다.
- 라. 이 사건 자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기보다는 선도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불건전한 이성 관계”로 다루어져야 타당함으로 학교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 가해 처분하였기에 처분 자체가 부적합하다.
- 마. 피해학생 측은 △△△△△△△△△에 치료비로 1,112,7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이미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해왔던 아이로,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으로 발생된 치료비라 볼 수 없다.
- 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학교 측이 사전 조사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진실이 왜곡된 학교 측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 되어야 한다.
- 사. 위법한 결정으로 청구인이 가해자가 되어 평생 짊어지고 가는 정신

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사실상 명예가 실추되었고, 경제적 부담 및 피해학생 측과 법적 쟁송에 대한 부담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친한 친구사이로 청구인은 자신의 남자 친구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며 피해학생에게 카톡으로 자신의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해보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시 위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직접 말했다고 인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페이스 북에 피해자의 성명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글을 전혀 쓰지 않았고 소문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쓴 글 “엿 같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해”에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피해학생의 실명과 행동에 대해 언급이 되었을 때 청구인은 부인하지 않고 댓글 “인생 망했음 좋겠다 쓰레기년 봐가면서 해 통수치지 말고”, “인생 망치게 하구 싶다 덕분에 내 맨탈도 나갔어”, “개빡침 내 친구한테 방금 싸가지 없는 것도 니년도 똑같다고 함 시발”을 달았으므로 의도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다. 2016. 7. 18. 청구인은 피해학생 교실에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 친구들이 알게 된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서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된 것이라 하였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이 남학생과 관계를 가진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렸다고 하였으며, 이후 피해학생은 학생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학

생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은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이 제출한 진술서와 피해학생 父의 주장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지만 학폭위에서 가해 및 피해학생 진술서, 목격자들 진술서, 기타 증거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마.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사생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만으로 피해학생이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 측은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민감한 사안을 확실한 물증 없이 처분할 수 없었다.
-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자체가 학교폭력이라기보다 선도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불건전한 이성 관계'로 다루어져야한다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어보자 제안을 하였으며,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린 사건, 교실 대화과정에서 반 학생들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사건 등에 청구인이 깊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해학생의 부친이 학교폭력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며, 이에 피해학생측에서 재심청구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 (2) 이후 청구인은 2017. 1. 20. 본 건 무효확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 2. 7.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였으며,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다.

나. 무효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1) 피청구인의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심판의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 말하는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라 함은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 (2) 본 사안을 돌이켜보건대, 청구인은 본 건 무효심판 청구 당시인 2017. 1. 20.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2017. 2. 7. 졸

업을 하여 더 이상 고등학생의 신분이 아니며, 더욱이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상의 조치내용도 모두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본 건에서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등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효 확인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만일 청구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상의 조치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청구인의 대학교 입시전형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위법상태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미 생활기록부상의 조치 내용도 삭제되었으므로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 사실상 명예실추, 추후 있게 될 법률쟁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본 건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청구인의 본 건 심판청구는 무효확인을 구할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처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상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되어 여기서 청구인 및 청구인 보호자의 입장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관련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건에서 제출된 청구인의 주장 및 진술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그 처분 내용에 있어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